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39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망 C의 소송수계인

가. D

나. E

변 론 종 결 2021. 3. 18.

판 결 선 고 2021. 4. 2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1987. 7. 14. 접수 제2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에게,
가.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5지분에 관하여,
나.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1992. 3. 19. 접수 제3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(단 피고 2는 망 C을 지칭함) 및 망 C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인 피고 D, E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청구를 구함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은정

별지